

지원사항(지방세 감면)

지원대상	취득세	재산세	비고
신축/증축	50% 경감	5년간 75% 경감	
대수선	25% 경감	해당없음	

※ [지방세특례제한법] 제78조 제4항 (2017년기준)

※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